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 평가 결과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 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025. 12. 30.>		
2)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12명 (경무관 1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4)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5)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1명 (경무관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남·경북·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12명 (총경 1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7)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74명 (경정 74명)	2028년 9월 30일까지
8)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0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